

|              |                    |                  |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br>결<br>사<br>항 |
| 의 결<br>연 월 일 | 2020. . .<br>(제 회) |                  |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김현미<br>(국토교통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 제 처 심 사 전

## 1. 의결주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  
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차령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차령 2년 추가,  
노선버스 기본차령 1년 추가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2020. 0. 00.) 결과, 특기

할 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종   | 사 업 의 구 분                |                                                                          | 차 령    |
|-------|--------------------------|--------------------------------------------------------------------------|--------|
| 승용자동차 | 여 객 자 동 차<br>운 송 사 업 용   | 개인택시(경형·소형)                                                              | 5년     |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7년     |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9년     |
|       |                          | 개인택시[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9년     |
|       |                          | 일반택시(경형·소형)                                                              | 3년 6개월 |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 4년     |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 6년     |
|       |                          | 일반택시(전기자동차)                                                              | 6년     |
|       | 자 동 차 대 여<br>사 업 용       | 경형·소형·중형                                                                 | 5년     |
|       |                          | 대형                                                                       | 8년     |
|       | 특수여객자동차<br>운송사업용         | 경형·소형·중형                                                                 | 6년     |
|       |                          | 대형                                                                       | 10년    |
| 승합자동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                                                                          | 11년    |
|       | 노선버스운송사업용                |                                                                          | 10년    |
|       | 그 밖의 사업용                 |                                                                          | 9년     |

같은표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기본차령 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것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기본차령 변경에 관한 적용례)

기본차령 기간 내에 기존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1 - 3832 |